

문서번호	재무과-103703
결재일자	2015. 11. 2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10260호

주무관	재산관리팀장	재무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정은희	김유미	김종구	길수철	김경호	11/27 김기동
협 조					
	의회법무팀장	신수일			
	주무관	조은상			

**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 
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계획**



기 획 경 제 국  
( 재 무 과 )

#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계획

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규칙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## I 추진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91조의2(변상금 징수 특례)

## II 개정 사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규칙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## III 주요 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정비(안 제6조제1항)
- 나. 변상금 징수유예 관련 조항 정비(안 제34조)

## IV 추진 일정

- 2015. 11월말 ~ 12월초 : 입법예고(20일간)
- 2015. 12월말 : 조례규칙심의회 심의, 의결 후 공포

- 붙임 1. 개정문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  3. 입법예고문(안) 1부.
  4.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1부.
  5.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부.
  6. 일부개정 규칙(안) 전문 1부. 끝.

[붙임 1] 개정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
일부개정 규칙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 
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 
있는 사람
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  
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90조와 제91조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·의견  
서·분할납부”를 “제90조, 제91조, 제91조의2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·의견  
서 및 분할납부·징수유예 신청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19호의3”을  
“제20호의3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(별지 제20호의4 서식)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의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다만,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(性)의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p> <p>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·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</p> <p>3.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6조(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) 조례 제90조와 제91조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·의견서·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(별지 제19호의3 서식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4조(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) -- --- <u>제90조, 제91조, 제91조의2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·의견서 및 분할납부·징수유예 신청서</u>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 <u>제20호의3</u> -----</p> <p>4. <u>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(별지 제20호의4 서식)</u></p>

### [붙임 3] 입법예고문(안)

#### 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규정을 보완하여 규칙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정비(안 제6조제1항)
- 나. 변상금 징수유예 관련 조항 정비(안 제34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일까지 광진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유

####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haessal81@gwangjin.go.kr](mailto:haessal81@gwangjin.go.kr)
- 2) 주소 : (우 05026)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, 광진구청(자양동)
- 3) 팩스 : 02-3425-1725
- 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재무과(전화 : 02-450-734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